



「2022년 시험대비」 세법 출제영역별 모의고사(2)

| 김용민 교수 | 박문각남부고시학원

[출제영역 : 국세기본법]

07.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으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.
-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경우 경정청구 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④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소멸하면 장래를 향하여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한다.

[정답] ① ♣ 난이도 중

【해설】

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납세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.

[출제영역 : 국세기본법]

08. 국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ㄴ.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·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.
- ㄷ. 법인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만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- ㄹ.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담보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서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.

- ① ㄱ, ㄴ, ㄷ ② ㄴ, ㄷ, ㄹ
- ③ ㄱ, ㄹ ④ ㄴ, ㄷ

[정답] ③ ♣ 난이도 중

【해설】

- ㄴ.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·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- ㄷ. 법인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[출제영역 : 소득세법]

09.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해당 거주자(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

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)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
- 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.
- ③ 분리과세이자소득, 분리과세배당소득,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다.
- ④ 부양가족의 경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(직계비속·입양자는 제외한다)이 취학·질병의 요양,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.

[정답] ③ ♣ 난이도 중

【해설】

③ 분리과세이자소득, 분리과세배당소득,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출제영역 : 소득세법]

10.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항상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.
- ②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로 한다.
-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.
- ④ 거주자(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)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.

[정답] ③ ♣ 난이도 상

【해설】

-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담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.
- ②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
- ④ 거주자(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

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)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.

[출제영역 : 국세징수법]

11.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치지 못하며 채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.
- ② 채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.
- ③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.

[정답] ① ♣ 난이도 중

【해설】

① “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(天然果實) 또는 법정과실(法定果實)에도 미치지 못하며 채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”

[출제영역 : 부가가치세법]

12.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.
- ②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.
- ③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
- ④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.

[정답] ③ ♣ 난이도 중

【해설】

③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< 다음호에 계속 >